

—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6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6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6월 21일

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문화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한 면복지회관 효율적 운영
- 일부 복지회관만 적용되는 조례를 타 복지회관에도 적용.

다. 주요내용

- 면복지회관 ⇒ 읍·면복지회관으로 변경(제명, 관련조항)
- 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: 면장 ⇒ 읍면장으로

라. 참고사항

- 타 시군복지회관설치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해평면 복지회관이 설치운영되면서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, 그 후 산동복지회관이 준공 운영되고, 기타 읍면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조례 시행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.

- 단순 명칭변경과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,
- 면단위 지역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며, 기타 조례와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